

## II. 세대교역자 제도

### 1. 이끄는 말

21세기를 향한 지구촌의 국제사회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돌입하여, 정치·경제·종교·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체제 변혁이 야기되는 오늘날 민족보호주의, 경제 강국간의 보호장벽 등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가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어 감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大山종법사의 UR운동, 麓山종법사의 삼동윤리정신이 앞으로의 인류를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향도하는 길이 되어 大宗師가 예시한 일원의 진리에 필연적으로 귀의할 미래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단3대(원기 100년대)를 발전적으로 열어가기 위하여 그동안 수년에 걸쳐 논의되어 온 전무출신제도에 대하여 특히 침체된 교화 활성화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양질의 인재자원을 유도하고 그들의 생활보장을 견고히 하는 방안으로 『세대교역자제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 검토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도덕적으로 가장 至高至純한 가치실현을 지향하는 교역자생활에 있어서, 세대교역자제도의 수용이라는 것은 상반된 평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하는 당위성에는 과거의 지역적 역사적 사회적 종교환경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급변화함에 따른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미래지향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이 일원대도의 진리를 널리 선양하는 목적으로 있으므로 선진들의 법문 말씀의 깊은 뜻이 헤아려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간의 연구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대종사, 정산종법사, 대산종법사의 법문에 바탕하고, 선진들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세대교역자의 개념

1) 세대교역자란 세대 즉 가족을 도량(교당)안에 대동하고 교직 수행에 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초기 교단에서 교당에 감원도 없고 또한 정토회원(가족)의 생활유지도 곤란해서 결혼한 남자교무가 교당에 파견될 때 정토회원이 보좌토록 한 데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2)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0장에서는 『돌아오는 세상의 법은 국한없는 법이라야 하므로 많은 중생을 포용하여 불은을 두루 입게 하기 위하여서는 희망에 따라 외가 다 포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라』는 말씀을 상기해 볼 수 있다.

3) 대산종법사법문 3집(330쪽)에서 정남·정녀규정을 감정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정남·정녀의 규정을 두는 것은 성불제중을 더 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니 淑男·淑女와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 교단 만대를 놓고 볼 때 차별하는 것과 아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세계정세로 보아 앞으로 숙남·숙녀가 더 많이 나올 것이며,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정남·정녀들이 너무 상을 내지 말고 아량을 보여야 많은 숙남·숙녀들이 나올 것이다. 많은 불보살들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정남·정녀의 사후 성적은 한급씩 더 올려주어야 한다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숙남·숙녀 하기란 정남·정녀 하기보다 더 어려우니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60년 10월 27일)

이상과 같은 말씀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자 견해차가 있음이 교단의 현실이며, 이 말씀들의 의미 또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의미상의 개념을 구분지어 본다면 ①세대(가족)를 동반하고 가서 교역에 임하는 것으로, 정토회원이 교당 교역자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 ②부부가 다 교무자격을 갖추고 함께 생활하며 교역에 임할 경우 ③교무자격을 갖춘 교역자 부부가 각기 교역에 임하는 장소 만큼은 분리하여(다른 교구 및 다른 교당, 기관등)근무하는 등 세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 타종교 교역자제도

다양한 종교 교역자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한 연구상의 시간적, 지역적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우선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종교의 제도형태를 보면,

- 1) 한국불교계의 한국불교태고종, 대한불교진각종, 한국불교법륜종 등은 결혼을 허용하나 배우자에게 동일한 교역의 임무는 부여하지 않고 숙식생활이 가능할 경우 보좌역할을 하게 한다.
- 2) 일본불교에 있어서는 천이백년대 정토진종에서부터 승려제도가 확립되어 선종(임제계통의 조동종)계통을 제외하고는 거의 결혼하여 교화를 하는데 배우자(부인)는 집사(執事)역 할(원불교 교단의 주무역 할)을 하고 가족이 같이 숙식 생활을 한다.
- 3) 개신교 역시 여러 종파에 있어서 결혼하여 숙식생활을 가족이 함께 할지라도 교역에 있어서는 배우자에게 동일한 자격은 주지 않고 간접보좌에 그친다.
- 4) 구세군에 있어서는 부부가 동등한 교역자 자격을 제도상으로 인정받은 종교 교역자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1) 선발 및 양성

구세군 교역자(사관)가 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구세군 사관학교(신학교)에 입교하여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① 구세군 병사(세례)로 입대한 후 1년 이상이 된 자로서 신앙이 독실하고 소명감이 확실해야 하며 담임사관과 지방장관의 추천을 받아 본영에 서류를 제출하면 본영 심사위원회(청년부서기관)의 심의를 거쳐 사령관의 허락을 받아 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면 사관학교에 입학한다.

② 남자는 병역필(또는 면제)해야 하며 학력은 고졸 이상 연령은 만 35세까

지, 결혼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가능하다.

③ 결혼하여 동부인하고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미혼인 상태에서도 입교가 가능하다.(부부와 가족이 함께 기숙사 생활)

④ 다만 독신으로 사관학교 수료후 남자나 여자가 결혼상대자를 결정할 경우는 반드시 사관후보생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⑤ 2년간 기숙사 생활 및 교육비는 만국 본영에서 책임진다.

## (2) 인사 및 처우

①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부위(계급)에 임명되며 부부간 또는 독신으로 본영의 인사명령에 의해 각 영문에 파견되어 전도활동을 한다. 5년간 근무하면서 소정의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마친 후 2주일간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정식 사관 정위에 임명된다.

② 각 사관의 계급과 연조에 따라 본영에서 정한 생활비내에서 각 영문에서 가족생활을 영위하며(동부인과 독신은 차등 지급), 65세가 되면 정년퇴임하여 정년자 집단거주지(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낸다.

## 4. 세대교역자제도의 방향

1) 세대교역에 임하고자 하는 교역자는 현 정토회원을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이수시켜 준교역자(가칭 보교)의 자격을 부여하여 봉직토록 임명한다. 교육기간과 훈련기간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세대교역을 희망하는 정토회원 또는 정토회원 희망자를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시켜 교육을 받게 한 후 동등한 교무 자격으로 세대교역에 임하도록 한다. (입학 또는 편입학은 대학 시험절차에 따른다)

3) 동등한 자격의 교무가 결혼하여 세대교역에 임하고자 할 때는 엄격한 심사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해 본다면, ① 두사람의 결합이 경제적 측면이나 교화적 측면에 있어서 공익 실현에 보다 우선적이고 효율적인가, ② 두사람 상호간 철저한 신심 공심 공부심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③ 청빈을 생활신조로 하여 개인소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가 등을 들 수 있다.

## 5. 맷는말

세대교역자제도에 대하여 선후진 남녀간에 많은 견해차가 있겠으나, 일원대 도 선양에 박차를 가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류구원의 역동적인 힘을 모 으고자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여된 문제에 접근해 보았다. 위에서 밝힌 아주 작은 의견을 그 출발점으로 하여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앞으로 계 속되어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 제도가 정립됨으로써 종족과 민족, 국경을 넘어 세계교화의 人的,物的 자원을 확보하고 교화의 활성화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하 면서 많은 협조와 격려 의견들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